

## 진 술 서

사 건 20○○카기○○○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

신 청 인(원고) ㅇㅇㅇ

피신청인(피고)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비용에 대한 부인과 그 이유를 진술합니다.

## 다 음

이 사건 소송의 사실관계는 기록에 의하면 명백한바, 신청인이 신청한 변호사보수비용은 별첨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의 별표와 전혀 상반되는 비용으로서, 비용산정에 있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정한 것인지 피신청인은이를 이해할 수 없음을 진술합니다.

## 소 명 방 법

1.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의 별표

2000. 0. 0.

위 피신청인(피고)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##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의 별표

소송목적의 값	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
1,000만원까지 부분	8%
1,000만원을 초과하여 2,000만원까지 부분 [8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,000만원) x $\frac{7}{100}$ ]	7%
2,000만원을 초과하여 3,000만원까지 부분 [15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,000만원) x $\frac{6}{100}$ ]	6%
3,000만원을 초과하여 5,000만원까지 부분 [21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3,000만원) x $\frac{5}{100}$ ]	5%
5,000만원을 초과하여 7,000만원까지 부분 [31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5,000만원) x $\frac{4}{100}$ ]	4%
7,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[39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7,000만원) x $\frac{3}{100}$ ]	3%
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[48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원) x $\frac{2}{100}$ ]	2%
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[68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억원) x $\frac{1}{100}$ ]	1%
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[980만원+ (소송목적의 값 - 5억원) x <u>0.5</u> ]	0.5%

제출법원	·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(수소법원)			
제출부수	진술서 1부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송비용